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1.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5조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개정('26.4.28.)에 따라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학교장 조치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

※ 근거법령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5조제3항

제35조(학교민원의 정의)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나. 제·개정 내용(안 제65조의 신설)

- 사유의 고지, 행위의 중지 요청 등 학교의 장 조치 전에 필요한 절차 사항 규정(제1항)
-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필요한 학교의 장 조치 사항을 규정(제2항)
-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(제3항)
- 교직원 또는 학교민원대응팀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규정(제4항)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 제기자에 대한 학교장 조치의 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학교 교육 활동 보호 강화

마. 국회 계류법안과 중복여부

- 중복법안 없음

바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